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4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4. 27.

발 의 자: 정주리 의원

찬 성 자: 장원만 의원, 김순애 의원,
김정열 의원, 나봉숙 의원,
배신정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활동기간 : 2026년도 제332회 정례회 집회일부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나. 구성인원 : 13명 이내
- 다. 활동내용 : 제3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 부의
- 라. 구성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

3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 설치), 제150조(결산)
- 나.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0조(특별위원회)
- 다.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4조(결산의 심사)

■ 관련법규

【지방자치법】

▶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▶ 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】

▶ 제10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,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.
-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④ 의회는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】

▶ 제64조(결산의 심사)

-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,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-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